

공정위 '97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목)부터 18일(토)까지 열흘동안 지난해 토건 도급순위 상위 200개사 중 77개 신용평가 A등급 업체와 26개 부도 또는 법정관리업체, 그리고 표창업체 1개사를 제외한 96개 하도급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요구하는 계약이행 보증이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준인 공사대금의 10%를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시정조치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시행 중인 중소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조기정착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는

특히 원사업자가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나, UR협정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 대비하여,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는 건당 하도급 공사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금지급보증 실적과 대금지급보증 미실행 사유, 제도 시행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로 구분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 참고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업체 (A등급) 도급순위별 분포 ◆

'96토건 도급순위	1~100위 (1,328억원 이상)	101~200위 (445억원 이상)	201~300위 (287억원 이상)	301위 이하	합계
업체수	54	23	19	47	143